

	규정		문서번호	TWP-A218
			제정일자	2017. 02. 22.
	명예교수 규정		개정일자	2018. 01. 18.
			개정번호	1

목 차

- 제 1조 목적
- 제 2조 정의
- 제 3조 개별계약의 원칙
- 제 4조 자격
- 제 5조 추대절차
- 제 6조 복무
- 제 7조 추대기간 및 처우
- 제 8조 신분보장과 퇴직
- 제 9조 구비서류
- 제10조 관련문서
- 제11조 보칙
- 부칙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2017.02.22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

구 분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사무처장	교무처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취업지원처장	기획홍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	규정		문서번호	TWP-A218
			제정일자	2017. 02. 22.
	명예교수 규정		개정일자	2018. 01. 18.
			개정번호	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,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의 명예교수라 함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을 추앙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추대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개별계약의 원칙) 명예교수의 임용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일지라도 임용계약은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이 대학교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
2. 퇴직 당시 교수로 있던 자
3. 재직 중 교육 또는 학술 부분의 업적이 탁월하고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자
4.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5조(추대절차) ① 총장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교원 중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명예교수 추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 선정된 명예교수 추대 대상자는 제9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1.18.>

② 명예교수의 추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임용하며, 임명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수여한다.

제6조(복무)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, 특별강의 또는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추대기간 및 처우) ① 명예교수의 추대기간은 1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명예교수에게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 또는 강의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료는 외래 강사(A등급)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<개정 2018.01.18.>

③ 명예교수에게는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.

④ 명예교수의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서로 따로 정한다.

제8조(신분보장과 퇴직) ① 명예교수는 임용기간 중 형의 선고·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받

	규정		문서번호	TWP-A218
			제정일자	2017. 02. 22.
	명예교수 규정		개정일자	2018. 01. 18.
			개정번호	1

지 아니한다. 다만, 학급,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명예교수는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. 단, 재임용 대상자는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, 재임용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개별 통보한다.<개정 2018.01.18.>

제9조(구비서류)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명예교수 추천 대상자 이력서
2. [별지 제1호 서식]명예교수 추천 대상자 공적 개요 및 추천 의견서
3. 기타 추천과 관련된 서류

제10조(관련문서)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학칙
- ② 직제규정
- ③ 교직원 보수 규정
- ④ 교원 인사관리 규정
- ⑤ 교수업적평가 규정

제11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방침에 의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0 - 호

임명장

성명 :

생년월일 : 19 년 월 일

20 년 월 일자

명예교수에 임함.

_____ 근무를 명함.

[임용기간 : 20 . . ~ 20 . .]

※ 관련규정 : 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(교원의 종류)

20 년 월 일

동원대학교총장